

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「지방세법」 및 「임대주택법」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함(안 제4조의2)
- 나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로 최저세율 전환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조문 삭제(안 제9조, 제17조)
- 다. 경제장관간담회결정('04.12.3)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고 무주택 영세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 확대 【전용면적 60~85㎡, 재산세 25%감면 추가】 (안 제10조)
- 라.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(안 제11조)
- 마.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「지방세법」 제274조 및 제275조의 취득기한 삭제로 감면 형평성을 위해 감면조례 기한 폐지(안 제21조)
- 바. 「부산교통공단→부산교통공사」 신설('06.1.1)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7조 내지 제9조

나. 입법예고 : 2006. 3. 10 ~ 3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「지방세법」 및 「임대주택법」 등 법령 개정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,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
-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%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나, 개정된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며
-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무주택 영세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
- 또한, 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“토지 및 지상건축물”에서 “토지·지상건축물·주택”으로 명확하게 하고, 수도권내 공장 등을 우리구로 이전 시,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임

-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「지방세법」 및 「임대주택법」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